

문 의	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	과 장 박진환 주무관 김건우	042-481-3455
	2015년 2월 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2월 8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특허청,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‘시동’

- 2015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 실시 -

- 특허청(청장 김영민)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「2015년도 특허행정 규제개선 과제 발굴 국민공모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공모대상은 출원·등록·심사·심판, 지식재산의 창출·활용·보호 등 특허행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他 부처 업무중 규제 개혁이 필요한 과제이다.
- 이번 공모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, 특허청 홈페이지,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.
- 접수된 과제는 민·관 전문가로 구성된 ‘특허청 규제개혁 위원회’의 심사를 거친 후 3월중 시상할 예정이며,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담당자 문의(☎ 042-481-3455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최우수 제안 1건(50만원), 우수과제 1건(30만원), 장려 2건(10만원)

- 지난해 특허청은 「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」을 최초로 발족,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·평가하는 ‘열린 규제개혁’을 추진하여,
-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, 특허출원의 형식요건 완화, 지식재산 금융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1조 4,834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,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.
-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“이번 국민공모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과제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,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.”고 말했다.

- 응모 안내 -

☞ 응모기간 : 2015년 2월 9일부터 24일까지

☞ 응모방법

(우편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
(e-mail) dhyess08@korea.kr (팩스) 042- 481- 1403

☞ 제안 신청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
붙임 : 규제개선 과제 공모 계획

1 추진 배경

- 현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특허청 소관 규제개선 방안 마련
 -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규제 기요틴(핵심규제 혁파), '손톱밑 가시 제거' 등 개선과제 발굴
 - 국민·현장중심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국민 공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·추진

2 추진 계획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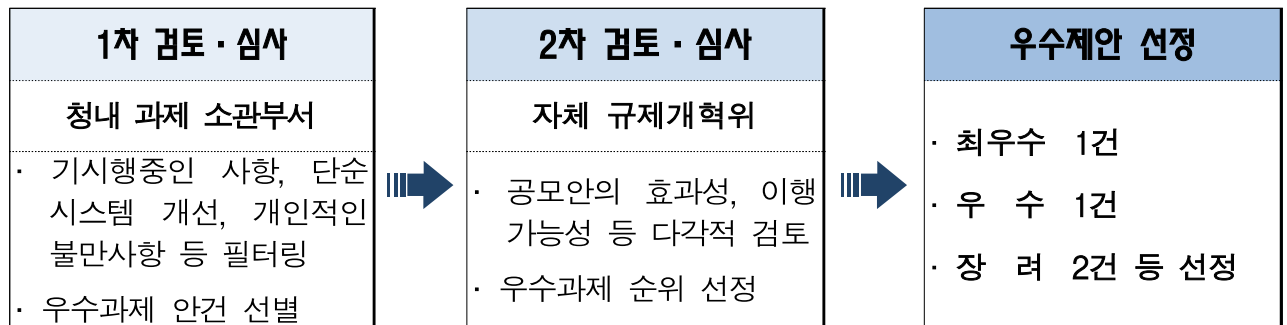
- 명칭 : 「2015년 특허행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국민공모」
- 온라인 접수기간 : '15년 2월 9일(월) ~ 2월 24일(화)
- 공모방식 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병행
 - (온 라 인) 국민 누구나
 - (오프라인) 협조공문 발송 및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한 의견 수렴
 - (협조공문)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산하기관 및 대한변리사회 등의 관련 단체
 - (간 담 회) 각 국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 간담회 또는 관련 단체 회원사 간담회 등에 참석(배석)하여 의견 청취 (수시)
 - ☞ <붙임5> 각 국별 간담회 계획(안) 참고
- 공모대상 : 특허행정 전반에 관련된 규제개선과제
 - 심사·심판·출원·등록,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, 정보화 및 지식

재산 관련 他 부처연계 사항 등

□ 검토 및 심사

- 접수된 과제는 (1차) 청내 과제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대상 건을 선별하고, (2차)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과제 및 순위 선정

☞ <붙임3>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참조



* 소관부서 1차 심사 후 자체 규개위 2차 심사로 우수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 최종 접수 과제건수 등에 따라 탄력 운영(규제개혁 TF팀 활용) ☞ <붙임4> 참조

○ 심사기준(총 100점)

- 경제·사회적 효과성(30점) : 개선안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대상 및 규모
- 이행 가능성(30점) : 제도개선으로 부작용 없이 문제해결에 기여
- 창의성(20점) : 현 제도의 틀에 매몰되지 않는 개선방안 제시
- 구체성(20점) :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안 등 대안 제시

【규제개선 우수과제라고 볼 수 없는 사항】

- 이미 실행 중인 과제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
- 법률상 · 행정상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단순한 주의환기 · 진정 · 비판 ·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등

○ 추진일정

- 접수(2.9~2.24) → 소관부서 1차 심사(3월 1주) → 자체규제개혁위원회 2차 심사(우수과제 선정, 3월 2주) → 시상(3월 중)